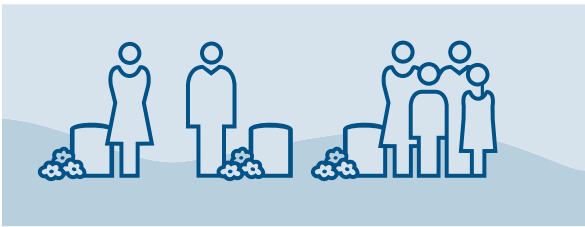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례 부조

COVID-19 팬데믹은 많은 가정에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FEMA의 임무는 재난 전에, 재난 발생 중에, 그리고 재난이 끝난 후에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금전적 스트레스와 짐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FEMA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COVID-19 관련 장례비에 대한 금전적 부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당되는 비용의 예:

- 사망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드는 교통비
- 유해의 수송비용
- 매장 장소 또는 납골당

장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이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장례 비용을 부담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미국령 거주자),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입니다.
- 사망한 사람이 미국시민이거나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었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에는 COVID-19로 인한 것이거나 그에 원인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20일과 5월 16일 사이에 사망이 발생했고, 사망증명서에 COVID-19이 그 원인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사망의 원인을 COVID-19에 연계시키는, 담당 공무원, 지역 검시인, 또는 검시관의 서명 진술서를 사망증명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표식 또는 비석
- 성직자 또는 사제 예식
- 장례식장 장비 또는 직원 이용 비용
- 화장 또는 매장 비용

FEMA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신청하기 위해 FEMA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보해 두십시오.

- 신청자 본인의 성명, 사회보장번호(SSN), 사망일, 우편주소, 연락처 등.
- 각 사망자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출생일.
-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의 위치 또는 주소.
- 매장보험이나 장례보험, 기부, 자원봉사기관, 기타 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단체 등 다른 출처로부터 이미 받은 부조에 대한 서류 및 영수증.
- 망인을 위한 장례비용에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부담했다면, 공동신청인의 성명 및 정보.

부조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FEMA의 COVID-19
Funeral Assistance Helpline
(장례부조 헬프라인)에**
1-844-684-6333
(TTY: 800-462-7585)
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9시(동부 표준시)
사이에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시작하세요.

신청을 한 후
[Disasterassistance.gov](https://www.disasterassistance.gov)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팩스
(855-261-3452)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COVID-19 Funeral Assistance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또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FEMA.gov/disasters/coronavirus/
economic/funeral-assistance](https://www.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
전화 및 웹사이트 모두 몇 개의
언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FEMA